

외국인 노동자들 위험한 '비닐하우스 삶'

광주 16명 거주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서 화재...인명피해 없지만 '아찔' 환기·소음·화재 취약 등 열악한 주거 환경...안전·인권 '사각지대' 고용청은 현황 파악 제대로 못해...비닐하우스 숙소 전수조사 필요

16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머물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불이 났다. 노동자들 모두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불과 1시간 여 만에 길이 50m 가량의 비닐하우스가 모두 탔다는 점에서 새벽에 불이 났다면 자칫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특히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살고 있던 이들에 대한 열악한 주거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무책임한 관리 실태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경기도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외국인 노동자 사건 이후에도 광주·전남지역 1만1000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60% 외국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외국인 인권·건강권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비닐하우스'에 외국인 16명이 살아도 묵인하는 정부-18일 광주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밤10시 50분께 광주시 북구 용두동 한 농원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 1시간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비닐하우스는 캄보디아와 네팔 출신 외국인노동

자 16명이 숙소로 사용하는 곳으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3개 동에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비닐하우스 뒷편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고 있는데도, 광주노동청은 변변한 실태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컨테이너에 냉·난방, 화장실 등을 갖췄지만 환기가 되지 않는 데다, 소음·단열·화재·수해 등에 취약하다. 외국인 노동자 단체에서는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노동부의 적극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해당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컨테이너 건물에 2-5명씩 살고 있었다"면서 "바퀴벌레 등 각종 벌레들이 많이 나온다"며 비닐 하우스 숙소의 고충을 토로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면서 "광주노동청이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

설 것"을 요구했다. ◇1만 1000명 외국인 노동자 중 60%는 어떻게 사는지 몰라=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아 내놓은 '외국인 근로자(E-9비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전문 취업비자인 E-9비자를 받아 들어온 광주·전남지역 외국인 노동자는 1만1143명. 비전문취업비자는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는 비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그러나 이들 중 4397명(광주 812명, 전남 3585명)에 대해서만 어디서 어떤 곳에 사는 지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직접 찾아가 주거실태를 꼼꼼히 살피고 적절한 주거 공간인지 확인한 게 아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준 서류만으로 알고 있는 게 전부다. 지난 해만 해도 상반기에는 일부 사업주에게 전화로 '숙소 이상 유무'를 자가 점검토록 했다. 하반기에 이뤄진 현장 점검은 고작 33곳이 전부였다. 아는 게 없으니 국회 등의 요구에도 개인 정보라는 이유를 내세워 외국인 노동자 숙소·근무 현황 자료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방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만 하다. 고용부는 지난 1월부터 '농·어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농·어업 분야 사업주가 '비닐하우스 내 시설' 등 불법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



지난 18일 오전 전남 화재로 인해 불타버린 광주시 북구 용두동 화훼농가의 비닐하우스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타버린 숙소의 잔해를 치우고 있다.

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 비닐 하우스 내 시설은 제외되면서 열악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 실태 개선이 요원하다는 게 노동계 시각이다. 광주지방노동청 담당자는 "자율점검 위주로 점검을 실시했다"면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장에 점검이 있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사항이라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문길주 전남도통권익센터장은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는 숙소나 집의 공간이 아니다"면서 "사실상 국제 직업소개소 역할을 하는 고용부가 이주노동자의 실태조사 모르고 있다는 것은 노동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차량높이 2.85m인 화물차 운전석에서 1.5m 떨어진 보행자 보였나, 안보였나

스쿨존 횡단보도 사고 현장검증 차량 높이가 2.85m인 화물차 운전석에 앉았을 때 1.5m 떨어진 곳을 걷는 보행자를 볼 수 없을까. 18일 오전 11시 광주시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 아파트 앞 왕복 4차선 도로. 도로에 세워진 6.5t 화물차에 노재호 부장판사와 배석 판사들이 번갈아 운전석에 올라탄 뒤 차량 앞을 지나는 보행자가 보이는 지를 살폈다. 왕복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막고 현장 검증을 진행되면서 지나던 주민들이 "무슨 일 있느냐", "또 사고 난 것이냐"며 모여들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가 찾은 곳은 지난해 11월 8.5t 화물차가 길을 건너던 네모녀를 치어 2살 아이가 숨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다. 재판부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을 위해 사고 지점을 찾아 사고 당시 상황을 검증하는 데 주력했다. 사고 운전자인 A씨와 변호인, 검찰도 함께 현장을 찾았다. 정확한 현장검증을 위해 가해 차량(8.5t)과 동일한 높이의 화물차(6.5t)를 준비했다. 사고 당

시 숨진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건너던 어머니와 같은 크기의 유모차 등도 검증에 투입했다. 현장 검증의 핵심은 '피해자에 근접한 상황에서 운전석에서는 피해자를 보기 어렵다'는 A씨 변호인측 주장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차량 전면 유리창에 설치된 2대 내비게이션이 A씨의 차량 설치 위치와 동일한 지 물었다. A씨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하다. 맞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3가지 조건 하에 현장 검증을 벌였다. 우선 ▲차량이 사고 발생 지점 앞 교차로에 정차했을 때 ▲차량 앞 범퍼가 횡단보도를 침범하지 않았을 때 화물차 운전석에서 피해자들이 보이는 지를 살핀 뒤 사고 당시처럼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침범, 유모차와 1.5m를 두고 멈췄을 때를 차례로 살폈다. 재판부는 167cm의 키인 A씨가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 상황을 주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같은 조건에서 유모차를 밀면서 도로를 건너는 상황도 재연하면서 운전석에서의 시야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도 주목했다. 노 부장판사는 "오늘은 차량 운전석에서의 시야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현장검증"이라며 "할 말이 있다면 향후 법정에서 하면 된다"고 말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 아파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재판과 관련해 현장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당시 8.5t 화물차가 세 남매와 어머니를 차로 들이받아 2세 여아가 숨지고 가족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나 광주 북구청은 사고 이후 횡단보도를 없애고 인도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한 상태. <광주지법 제공>

하며 현장검증을 마무리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 아파트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에 서 있던 네 모녀를 치어 2살 아이를 숨지게 하고 다른 가족들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두환 항소심 광주서 관할 이전 신청 기각

전두환(90)씨의 5·18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도 광주에서 열리게 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전씨측의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 여부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훼손 여부가 사자명예훼손 사건의 핵심 쟁점인 상황에서 헬기사격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장소가 광주 시내이고 목격했다는 증인 대다수가 광주나 인근에 거주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적 진실 발견과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광주지법에서 재판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1심 판결이 난 상태에서 항소심을 광주에서 진행하는 게 해당 사건 범죄의 성질상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 주장처럼 호남 일부 정치인, 시민단체 등의 반발과 부정적인 지역 정서가 존재한다고 해서 호남 민심이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판의 진행과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전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